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80
------	------

2013. 7. 4.  
재정경제위원회

## I .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3년 6월 14일

나.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다. 회부일자 : 2013년 6월 18일

라. 상정일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2013년 7월 4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 II . 제안설명 요지

- 2013년 서울특별시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고, 탄력적 정원관리를 통하여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 Ⅲ . 주 요 내 용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16,830명에서 16,933명으로  
총 103명 증원함 (안 제2조 및 별표 3)
  - 일반직 공무원 : 91명 증원 (6,819명 → 6,910명)
  - 교원(시립대 교수) : 12명 증원 (464명 → 476명)

## IV.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 남 중)

###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제한된 인력으로 행정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탄력정원관리제를 도입·운영하는 등 6급 이하 실무인력 91명과,

시립대학교의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인가 조건('12.8.)을 이행하고 도시과학분야 특성화 대학 육성 등을 위한 교원인력 12명을 증원하는 등, 총 정원을 16,830명에서 16,933명으로, 103명을 증원하는 사항임.

< 총 정 원 : 16,830명 ➔ 16,933명 (+103명) >

구 분	총 계	관 리 정 원			소방·교원	
		일반직	연구직·지도직	기능직·별정직	소방직	교원
증 감	+103	+91	-	-	-	+12
내 역	-	6급이하 +91	-	-	-	교수 +12

- 이는 총액인건비 기준인력범위 내에서 탄력정원제 도입·운영에 따른 일반직 정원(91명)과 시립대학교 전임교원의 적정 교원 확보(12명) 등 증원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

## 나. 분야별 세부검토

### 1) 일반직 정원의 증원(안 제2조 및 별표 3)

< 6급이하 실무인력 91명 증원내역 >

기 관	조 정 내 용
본 청 (+6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수요 증가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시정현안과제 추진 실무인력 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직 6급(+33) : 행정 26, 행정·사회복지 2, 행정·전산 1, 시설 2, 농업·녹지 1, 전산·방송통신 1</li> <li>- 일반직 7급(+27) : 행정 15, 행정·사회복지 3, 행정·전산 1, 환경·공업 1, 시설 3, 공업·시설 2, 간호·보건 1, 전산·방송통신 1</li> </ul> </li> </ul>
시 의 회 (+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 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직 6급(+3) : 행정 2, 행정·사회복지 1</li> <li>- 일반직 7급(+3) : 행정 3</li> </ul> </li> </ul>
직 속 기 관 (+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수요 증가분야 인력 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직 6급(+4) : 행정 2, 농업·농업연구 1, 농업·농촌지도 1</li> <li>- 일반직 7급(+2) : 행정 2</li> </ul> </li> </ul>
사 업 소 (+1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행정수요 증가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사업소 실무인력 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직 6급 (+5) : 행정 1, 행정·학예연구 4</li> <li>- 일반직 7급(+10) : 행정 1, 행정·전산 2, 시설 5, 공업·시설 2</li> <li>- 일반직 9급 (+4) : 사서 4</li> </ul> </li> </ul>

- 개정안은 2단계 조직개편('12.9.28) 이후 발생한 부서별 인력수요 (4월말 기준 총 196명) 중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인력증원이 시급한 6급 이하 91명을 증원하는 것임.
- 이에 본청 정원은 아파트관리 투명성강화, 층간소음문제, 보도

블럭 개선, 어린이집 현장점검 등에 투입되며, 시의회는 사회 복지인력 보강, 의정자료실 확대, 장애의원 보조인력 등으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정원내역은 다음과 같음.

< 상세 증원 내역 >

정원	주요 내용	정원조정 내역
+91	① 서울혁신기획관 인권정책, 공유도시 서울,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인력 보강	▶ (+5)
	② 마곡사업추진단 보타니공원 조성 관련 인력	▶ (+2)
	③ 시민소통기획관 시정여론조사 통합관리 추진인력	▶ (+1)
	④ 여성가족정책실 어린이집 비리근절대책 추진, 아동청소년 관련 신규사업 인력	▶ (+2)
	⑤ 정보기획단 빅데이터 수집관리·활용업무, 사이버테러 및 해킹 대비 전문인력 보강	▶ (+4)
	⑥ 기획조정실 시정컨설팅 지원, 타 지자체 교류협력사업, 대중국 교류업무 전문인력	▶ (+3)
	⑦ 경제진흥실 협동조합 육성시책 추진, 전통시장 지원대책 추진 인력	▶ (+4)
	⑧ 복지건강실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관련 전문인력 보강	▶ (+5)
	⑨ 재무국 사회적약자기업 제품구매 확대, 계약제도개선 관련 인력 보강	▶ (+3)
	⑩ 행정국 신청사 시민공간 활용·공간관리 업무, 특별사법경찰 업무 전문성 강화 인력	▶ (+8)
	⑪ 교육협력국 평생교육 진흥관련 시민대학 운영·관리 업무 인력보강	▶ (+4)
	⑫ 도시계획국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인력 보강	▶ (+1)
	⑬ 도시안전실 보도관리 사업, 도로포장 조사·분석, 국가안전관리체계 개편 관련 안전관리 기능 강화 인력	▶ (+9)
	⑭ 주택정책실 아파트관리비 투명성 제고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 업무 인력,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에 따른 건축행정인력 보강	▶ (+4)
	⑮ 행정업무 법률전문성 강화 및 소송 증가 대응 등 주요분야(재무주택민생침해대책도로지하철) 법률전문인력 보강	▶ (+5)
	⑯ 시의회사무처 의정지원 인력 보강	▶ (+6)
	⑰ 인재개발원 채용시험 확대 및 역량평가 강화 추진인력	▶ (+4)
	⑱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 연구개발 활성화 인력	▶ (+2)
	⑳ 공원녹지사업소 푸른수목원 개원 관련 운영인력	▶ (+1)
	㉑ 데이터센터 서버관리 및 종합관제 인력보강	▶ (+2)
	㉒ 도로사업소 서울시도(차도)상 맨홀관리 업무이관(자치구→시)에 따른 관리인력 보강	▶ (+7)
	㉓ 서울도서관 자치구, 도서관 및 관련단체 간 네트워크·협력사업 확대 관련 인력 보강	▶ (+4)
	㉔ 서울역사박물관 경교장 운영 및 미래유산 보존기능 강화 전문인력	▶ (+3)
	㉕ 한성백제박물관 백제 유적 발굴조사 및 학술기반 조성 인력	▶ (+2)

- 경제진흥실의 ‘협동조합’ 관련 정원은 2명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시행(‘13.12.1)에 따라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체계 구축 등 관련 업무량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13.2.16)에 따라 협동조합 홍보·지원체계 마련하고 협동조합 사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증원요청 사항임.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협동조합 사무가 자치구로 위임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협동조합사무가 자치구로 위임될 경우 등을 감안하여 인력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복지건강실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관련 정원은 5명임. 복지 수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기초단체의 사회복지직 확충(서울시 자치구 ‘12~’14년 466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복지업무의 컨트롤 타워기능을 수행해야하는 본청의 복지건강실의 경우, 사회복지직이 16명에 불과하여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어려움에 따른다는 집행부서의 설명임.
- 서울시와 자치구간 복지정책의 연계강화와 복지정책수립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 강화의 필요성은 일부 있겠으나, 최근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잇단 자살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킨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함을 고려할 때, 자치구에 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이는 바, 본청에 정원이 증가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행정국의 ‘특별사법경찰인력 증원’ 사항은 지난 제245회 임시회에서 특별사법경찰 업무의 연속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자치구 파견 직원을 대체할 수 있는 서울시 인력의 보강이 필요함에 따라 일반직 7명이 증원된 바 있음.
- 특별사법경찰은 전문행정 영역의 각종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식품 위생, 의약, 공중위생, 환경 등의 분야에서 행정법규 위반사건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특별사법경찰 인력은 총 111명으로 이 중, 서울시 인력은 36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명은 자치구에서 파견된 인력임.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의 인력 현황>**

구분	합계	일반직(특사경)					기능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정 원	36	32	1	7	17	7	4
조 정	43	39	1	7	18	13	4
과부족	+7	+7	-	-	+1	+6	-

- 자치구 파견 인력들의 잦은 교체가 발생하여, 수사의 연속성 및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일부를 서울시 자체 인력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그러나 지난 임시회에 이어서, 7명의 인력을 추가로 증원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인력운영이라 보기 어려움. 서울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따르면, '14년도에도 특별사법경찰의 자체인력 확대 계획이 있으므로, 자치구와 서울시와의 인력 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인력수요를 검토하여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도시안전실의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면개편에 따른 '안전관리' 관련 정원은 5명으로, 정부의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종합적·체계적인 안전관리 수행을 위해 안전문화 등 신규 안전행정 분야 기능 보강하기 위한 증원요청 사항임.
-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이 안전·재난 조직은 안전분야 총괄 전담 부서 없이 재난유형별로 산재되고, 재해 예방 및 복구 중심으로 운영되어 수직적 및 수평적 협력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안전관리를 수행하기에 미흡하고, 풍·수해 등 자연재해의 경우 적절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안전문화 등 신규 안전행정과 식품, 청소년안전 등 사회 안전에 대해서는 조직 및 업무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음.



### < 안전행정부의 조직관리지침 시달 >

- ▶ 안전분야 신규 기능에 대해 시·도별 10명 보장
- ▶ 신규기능 : 안전정책조정회의, 안전문화운동, 안전공동체, 민간협의체 지원 등
- ※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시·도 조직관리지침 시달(안행부 자치제도과-517호, '13.5.6)

- 이에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개편시 안전조직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개편하되, 인구 규모,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총괄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조직 관리 지침을 시달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가 신규 안전행정에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5명의 정원을 요청한 사항임. 그러나 이미 수회에 걸친 조직 개편을 통하여 안전 분야에 대해 조직이 일부 강화된 기능도 있기 때문에 신규기능에 5명의 정원을 증원시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봄.
- 기획조정실 '주요소송' 관련 법률전문 인력 정원은 5명으로, 소송 증가와 행정환경 복잡화·다양화에 따른 행정업무의 법률적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재무·주택·민생침해대책·도로·지하철 등 주요 분야별로 법률전문 인력 보장하기 위한 증원을 요청한 것임.
- 시정의 주요소송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한 법률전문 인력 보강에 대해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중기기본 인력계획'에 따르면

2013년도에는 변호사 인력은 3명으로 계획되어 있었음. 따라서 법률전문인력 2명이 더 증가될 필요성이 있는지, 과다하게 정원이 확보되는 것이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인재개발원의 '채용시험 및 역량평가 강화' 관련 정원은 4명으로, 공무원의 공채시험 횟수가 확대(1회→2회) 되고, 공채시험방식이 인성적성검사와 면접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경력자 채용시 토론 방식으로 개선되었음.
- 또한, 계약직공무원 채용시 통합 채용하도록 함에 따라 채용전담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5급 승진대상자의 역량평가가 확대되어 업무량이 증가됨에 따라 증원을 요청한 사항임.
- 공무원 채용방식의 변경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된 것은 이해되나, 이러한 업무량의 확대 등을 사전에 예측하여 '중기기본인력 계획'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 하겠음. 향후에는 중기기본 인력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겠음.
- 서울도서관의 '정보자료과 확대와 도서관 협력 체계구축' 관련 정원은 4명으로, 도서관 개관 후 대출 건수나 이용자수가 타 도서관을 상회하고 있으며, 서울대표도서관으로서 서울 시내 도서

관, 자치구, 관련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 사업을 강화함은 물론, 대표도서관으로서 도서관정책의 개발, 독서문화 활성화 등의 역할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증원을 요청한 사항임.

- 서울도서관은 개관당시 사업소(4급)로 개편하여 정원 37명에 현원 34명으로 운영되고 있음. 시민들이 방문이 잦은 장소로 도서 대출 건수나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운영기간이 짧기 때문에 일시적·계절적 수요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서울도서관 이용현황 비교 >

(2012년, 개관일 300일 기준)

구분	면적(m <sup>2</sup> )	직원 (서비스 사서 현원)	일반도서(권)	대출이용현황		출입자수 1일평균 (명)	사서1인 서비스인원
				대출이용자수	대출건수		
서울도서관	9,499	37(15)	200,096	171,300	411,300	6,875	425
정독도서관	13,247	61(30)	522,613	199,074	397,806	6,262	208
남산도서관	9,409	48(24)	481,240	103,073	347,279	4,603	192
인천 미추홀도서관	13,099	33(17)	284,603	199,725	397,981	2,942	173
대전 한밭도서관	22,416	63(40)	486,719	160,176	344,344	4,824	120

- 또한, 중기기본인력계획에는 2013년도 이후 인력 증원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에는 소요인력에 대한 수요 및 공급 예측을 보다 면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 2) 서울시의회 사무처 인력운용

### <서울시의회 사무처 인력현황>

(‘13. 4. 15 현재)

구 분	합 계	일 반 직					별 정 직				기 능 직	계 약 직
		소계	1급	4급	5급	6급이하	소계	4급	5급	6급이하		
정 원	261	108	1	4	24	79	35	9	3	23	61	57
현 원	269	107	1	4	24	78	33	9	3	21	72	57
과부족	8	-1	-	-	-	-1	-2	-	-	-2	11	-

※ 서울시교육청 소속 직원(15명) 미포함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인력 증원은, 시의회 자료실이 「전문 도서관」으로 확장, 운영됨에 따라 ‘의정자료팀’을 신설하여 사서 5급 1명의 정원(현재 자료실 인력 2명은 도서관법상 최저 배치인원 3명보다 적음)임.
- 또한, 주요재정 현안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요구사항은 늘어나고, 복지사업 및 예산은 질적·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와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복지관련 전문 인력 1명과 장애의원의 이동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의정보조활동 등을 지원(「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근거 규정) 하기 위한 전문 인력 2명임.
- 다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증원은 타당한 측면이 있겠으나, 아무리 긴급하게 인력이 필요하여 결원 발생한 정원을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동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해당인력이 일부 채용된 것은 적정한 절차라고 보기 어려움. 향후 이와 같은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음.

### 3) 탄력정원제 도입

- 탄력정원제의 개념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중앙정부가 시행해오고 있는 ‘유동정원제’와 2013년 「정부조직관리지침」으로 시달된 ‘통합정원제’를 합친 개념임.
- ‘유동정원제’는 신규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원 가운데 일부를 각 부처 내에서 재배치하는 것이고, ‘통합정원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정과제·협업과제 등 신규인력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통합정원으로 정하여 운용하는 것임.
- 서울시도 5급 이하 일반직 정원의 3~5%를 탄력정원(정원 POOL)으로 정해놓고 여성비율이 높아 결원 발생율이 높은 부서, 정책확산을 위해 일정기간 집중 추진이 필요한 업무, 실국 협업과제 등에 탄력정원을 배치할 계획에 있음.

- 탄력정원의 배치기간은 사업성격에 따라 6개월에서 2년으로 계획을 세워 탄력정원의 존속기한을 종료시점에서 자동으로 회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인력진단을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하거나 일반정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탄력증원관리제 운영정원 >

(단위 : 명)

구 분	계	본청	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정 원	6,559	2,981	165	304	3,109
탄력정원	247(3.8%)	143	8	10	86
재배치	156(63%)	83	2	4	67
순증	91(37%)	60	6	6	19

- 이에 따라 탄력정원제 운영수요를 산출하면, 업무량 증가수요 144명, 육아휴직 결원수요 40명, 출산휴가 결원수요 39명, 장기병가 결원 수요 24명, 총 247명으로 현행 정원의 3.8%임.
- 동 제도는 실·국간 칸막이를 없애고 수요에 따라 인력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장점이 있겠으나 일견, 5급 이하 일반직 정원의 3.8%에 해당하는 탄력정원제로 인해 의회의 감시와 통제에서 일부 벗어나 의회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 그러나 5급 이하 일반직 정원의 경우, 총 정원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회의 심사가 필요하나, 5급 이하 총 정원 내에서의

인력운용에 대한 사항은 시장(시 집행부)의 재량권에 해당되는 사항임.

현 행		91명 증원 ⇒	개정안	
5급이하 소계	<u>6,559</u>		5급이하 소계	<u>6,650</u>

- 따라서 개정안의 핵심사항인 ‘탄력정원제도’를 인정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인력운용의 효율화, 범정부적 통합정원제 운영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사항임.

#### 4) 시립대학교 교원인력의 증원

- 개정안은 시립대학교의 양질의 교육 및 연구 환경 기반구축을 위해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설립인가 조건 이행을 위한 교원 3명, 경영학 교육인증제 평가대비 교원 2명, 도시과학분야 특성화를 위한 교원 3명(도시행정학과1명, 도시공학과1명, 도시사회학과1명), 교수확보율이 낮은 학과의 교원 4명(세무학과1명, 사회복지학과 2명, 스포츠학과 1명) 등, 총 1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 증원 요청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정원 증원요청 내역>

구 분	학생수 (편제정원)	교과부 기준정원	서울시 정원	정원 확보율 (%)	증원 요청 (안)	증원요청(안) 적용시		
						정원	교수 1인당 학생수	정원 확보율(%)
국제도시 과학대학원	117명	6명	3명	50.0%	3명	6명	19.5명	<u>100%</u>

-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설립 인가에 따른 정원 요청 사항은, 지난해 시립대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이 설립·승인(2012.8.2.) 되면서 교육부에서는 관련분야 교원 6명 이상의 교원확보를 조건으로 승인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지난해 3명의 정원은 충원되었으나, 나머지 3명의 교원 정원을 금년도에 확보하려는 것임.

※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설립개요

- 명칭 : 국제도시과학대학원(International School of Urban Sciences(ISUS))
- 개설학기 : 2013학년도 제 1학기
- 학위과정 : 석사과정(MS in International Urban Sciences)
- 대 상 : 국내외 학부 졸업자, 해외건설 및 도시개발 관련 재직자
- 입학정원 : 석사 39명(글로벌건설경영학과, 첨단녹색도시개발학과)
- 졸업 최소연한 : 석사 4학기(26학점)
- 교과목 이수요건

(단위: 학점)

과 정	교과목학점			연구학점	계
	공통필수	전공필수	전공선택		
국제도시과학 석사	6	6	12	2	26

※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24학점 이상으로 함.

- 설립목적 및 필요성
  -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서울시의 자매·우호도시 공무원대상 석사과정과의 학제간 연계를 통해 다양한 인적네트워크 형성과 정부와 서울시, 기업의 해외진출에 교두보 역할 등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 도시의 비약적 인구성장에 따라 도시 인프라 투자를 본격화 하면서 우리나라의 고도성장과 대형 신도시 건설 경험이 신흥국 도시개발에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어 외국인학생을 적극 유치할 경우 글로벌 도시과학 교육의 허브(Hub)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지난해 부족한 3명의 교원은 관련 유사학과의 전임교원으로 전공 교수단을 구성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해왔고, 교육부의 승인사항이 반드시 금년까지 정원 확보를 완결해야 된다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동 대학원에 대한 정원 확보의 절실함과 시급성 등을 따져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경영학교육 인증평가를 위한 교원정원(2명)은, 시립대의 경영학 교육 인증을 획득(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하기 위해 향후 학부·대학원 통합인증 획득을 위한 지속적인(40명) 교원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금년도 2명의 교원정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 경영학부 교수정원 증원요청 내역 >

구 분	학생수 (편제정원)	교과부 기준정원	시립대 정원	정원 확보율(%)	증원요청 (안)	증원요청(안) 적용시		
						정원	교수 1인당 학생수	정원 확보율(%)
경영학부	1,282명	51명	33명	64.7%	2명	35명	36.6명	<u>68.6%</u>

이는, 인증과정을 통해 국제표준 수준의 교육의 질과 대외 인지도 제고를 통하여 대학의 국제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5년 인증 획득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경영학부의 경우 정원확보율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증원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시립대의 도시과학분야 특성화를 위해 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IUDP)을 통해 서울시 자매우호도시 및 정부지정 협력국 공무원을 초청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학문적 선도를 위한 도시과학분야의 국제학술지를 육성할 계획에 있음.

< 도시과학분야 특성화 교수정원 증원요청 내역 >

구 분	학생수 (편제정원)	교과부 기준정원	시립대 정원	정원 확보율 (%)	증원요청 (안)	증원요청(안) 적용시		
						정원	교수 1인당 학생수	정원 확보율(%)
도시행정학	296명	12명	8명	66.6%	1명	9명	32.6명	75%
도시사회학	252명	10명	7명	70%	1명	8명	31.5명	80%
도시공학	319명	16명	10명	62.5%	1명	11명	29명	68.7%

시립대가 도시과학분야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전략적 국제화가 필요함. 특히 강점이 있는 도시과학 분야 등을 국제적 연구거점 대학으로 키우고, 국내·외적으로 ‘도시과학의 세계적 메카’로 특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됨. 이를 위해 교육의 질적 기반을 조성하는 교수 정원의 확보는 대학의 필수 과제라는 점에서 도시과학분야 특성화를 위한 교원정원(3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음.

- 또한, 시립대에서 교육부의 법정정원 대비 정원확보율이 현저히 낮은 학과는, 사회복지학과(2명), 세무학과(1명), 스포츠과학과(1명) 등 4개 학과임. 교육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고 타 학과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적정 교수 요원을 보강시킬 필요성이 있겠음.

< 교수 확보율 낮은 학과 교수정원 증원요청 내역 >

구 분	학생수	교과부 기준정원	시립대 정원	정원 확보율(%)	증원요청 (안)	증원(안) 적용시		
						정원	교원 1인당 학생수	정원 확보율(%)
사회복지학과	334명	13명	7명	53.8%	2명	9명	37.1명	69.2%
세무학과	260명	10명	5명	50%	1명	6명	43.3명	60.0%
스포츠과학과	176명	9명	5명	55.5%	1명	6명	35.2명	66.6%

- 한편, 금번에 정원 개정안이 반영될 경우, 시립대의 총학생수 10,994명 중 전임교원은 당초 401명에서 413으로 증가되어 교육부 정원 산정 기준<sup>1)</sup>에 따르면, 교원확보율이 79.5%에서 81.9%로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타 국·공립 대학 전임교원 확보율 비교 >

(단위:명)

대학별	학 생 편제정원(A)	교 과 부 기준정원(B)	교원정원(C)	교원1인당 학 생 수(A/C)	교원확보율 (C/B×100)	비고
<b>서울시립대</b>	<b>10,994</b>	<b>504</b>	<b>401</b>	<b>27.4</b>	<b>79.5%</b>	
서울대	30,390	1,663	2,164	14	130.1%	국립
전북대	23,461	1,236	1,024	22.9	82.8%	국립
제주대	12,360	605	606	20.3	100.1%	국립
경상대	17,531	899	804	21.8	89.4%	국립
충북대	17,996	898	743	24.2	82.7%	국립
강원대	18,383	915	761	24.1	83.2%	국립
인천대	11,973	548	390	30.7	71.1%	국립

1) 교과부 기준 정원산정 :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대학(교육대학을 제외한다)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아래 표에 의한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계열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교원 1인당 학생수	25	20	20	20

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6,830”을 “16,933”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9,594”를 “9,679”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464”를 “476”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269”를 “275”로 한다.

별표 3의 총계란 중 계 “16,830”을 “16,933”으로 하고, 같은 표의 일반직 계란 중 계 “6,819”를 “6,910”으로 하며, 같은 표의 5급 이하 소계란 중 계 “6,559”를 “6,650”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교육 공무원 계란 중 계 “464”를 “476”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교수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수 등	413			413	
------	-----	--	--	-----	--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16,830</u> 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lt;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gt;: <u>9,594</u>명</p> <p>2. (생 략)</p> <p>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u>464</u>명</p> <p>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u>269</u>명</p>	<p>제2조(정원의 총수) ----- -----<u>16,933</u> -----.</p> <p>1. ----- ----- -----: <u>9,679</u>명</p> <p>2. (현행과 같음)</p> <p>3. ----- -----: <u>476</u>명</p> <p>4. -----: <u>275</u>명</p>

# 신 · 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b>【별표 3】</b>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b>【별표 3】</b>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구 분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지속 기관	사업소	구 분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지속 기관	사업소
총 계	<b>16,830</b>					총 계	<b>16,933</b>				
정무직 계	2					정무직 계	(현행과 같음)				
일반직 계	<b>6,819</b>					일반직 계	<b>6,910</b>				
1급	6	5	1			1급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3급	20	16		1	3	2·3급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급	17	7		1	9	3급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4급	5	5				3·4급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급	202	119	16	7	60	4급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5급	10	10				4·5급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급이하 소계	<b>6,559</b>					5급이하 소계	<b>6,650</b>				
별정직 계	108					별정직 계	(현행과 같음)				
4급상당	1	1				4급상당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급상당 이하 소계	107					5급상당 이하 소계	(현행과 같음)				
연구직 계	320					연구직 계	(현행과 같음)				
연구관	50	1		32	17	연구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연구사	270					연구사	(현행과 같음)				
지도직 계	24					지도직 계	(현행과 같음)				
지도관	2			2		지도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지도사	22					지도사	(현행과 같음)				
소방공무원 계	<b>6,503</b>					소방공무원 계	(현행과 같음)				
소방준감	5	4		1		소방준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소방정	27	2		25		소방정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소방정또는기술서기관	1			1		소방정또는기술서기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소방령 이하 계	6,470					소방령 이하 계	(현행과 같음)				
교육공무원 계	<b>464</b>					교육공무원 계	<b>476</b>				
총장	1			1		총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교수 등	<b>401</b>			<b>401</b>		교수 등	<b>413</b>			<b>413</b>	
조교	62					조교	(현행과 같음)				
기능직 계	2,590					기능직 계	(현행과 같음)				